

의안번호	제 221 호
의 결 연 월 일	200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민경환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08년 4월 2일

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

(민경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08년 4월 2일
발의자: 민경환·박종갑·이규완
정윤숙·이영복·이대원
권광택(7인)

1. 제안이유

도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된 대학·연구기관·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 활성화와 이용정보 제공확대 및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내 대학·연구기관·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내 대학·연구기관·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충청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함(안 제1조).
- 나.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등을 늘리고 체계화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.
- 다. 도지사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도록 함(안 제4조).

라. 연구개발장비 활용 주관기관 지정(안 제5조)

- (1)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기관 또는 단체를 주관기관으로 지정
- (2) 주관기관은 충북공동장비 데이터베이스 구축, 지역장비 활용방안 수립,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

마.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6조).

바.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 협의회 구성 및 운영(안 제8조)

- (1) 협의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(2) 위원장은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주관기관의 공동장비 사업 총괄책임자로 함.
- (3) 협의회는 기능은 주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기본계획 수립 시 예산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4조의 규정 및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된 도내 대학·연구기관·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충청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연구개발장비”란 충청북도 소속 산하기관, 도내 대학, 출연재단, 기관 및 연구센터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구입 및 설치비용 50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공동장비로,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장비수요업체와 주관기관, 협력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.
2. “장비활용”이란 연구개발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주관기관”이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.
4. “협력기관”이란 지역기관, 업체 등 제품 및 개발품에 대한 장비 사용을 지원하는 등 장비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등을 늘리고 체계화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도지사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연구개발장비 활용 주관기관 지정 등)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충북공동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
2. 연구개발장비 활용방안 수립
3.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
4. 충북연구개발장비 홍보방안 수립
5. 장비 가동률 및 이용료 산정 표준화 방안
6. 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
7. 그 밖에 수요업체의 장비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지원)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협의회 운영)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,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한다)를 운영한다.

제8조(구성 및 운영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투자본부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주관기관의 공동장비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북도

내 장비 보유기관의 실무 책임자가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1. 기업의 연구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

2.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

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주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

2.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
⑥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⑦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여비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

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발췌

□ 과학기술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)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·사회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
제7조 (과학기술기본계획)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,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며,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
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
- 1의2.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·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 방향
- 2. 과학기술투자의 확대
- 3.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
- 3의2. 기업·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화
- 4. 연구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
- 5. 기초과학의 진흥

6.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,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
 7. 과학기술지식·정보자원의 확충·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
 8. 지방과학기술의 진흥
 9.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
 10. 남·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
 11.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
 12.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촉진
 13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.
 - ⑦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교육·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·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 (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) ① 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②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의 지원

2.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
 3.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
 4. 지방의 과학기술인력·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
 5.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에 있는 대학·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

- 제5조 (시행계획의 수립)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(이하 "시행계획수립지침"이라 한다)을 정하고,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.
-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,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, 매년 2월 15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,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, 매년 4월 30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.
- ⑤ 삭제 <2002.6.25.>

⑥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,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 (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)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의 제출·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관계행정기관장"은 "지방자치단체의 장"으로, "기본계획"은 "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"으로, "위원회"는 "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"로 본다.

제42조 (연구개발시설·장비의 고도화 추진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시설·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·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삭제 <2004.12.3.>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·장기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때에는 동 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시설·장비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1.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시설·장비의 확보방안
2. 연구개발시설·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
3. 연구개발시설·장비의 고도화방안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기기센터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시설·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⑤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·장비확보계획 및 연구개발시설·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·장비의 확보·고도화 및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⑥ 관계 행정기관장은 대학,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시설·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